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9(수) 10:00

#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54호
- 나. 제 출 자 : 이인식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 2. 제안이유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5조)
- 다.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라. 보급 및 이용촉진(안 제8조)
- 마. 단체의 육성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바.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3. 11. 16. ~ 2023. 11. 22.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5조)
  -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 3)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6조 및 안 제7조)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악교육, 창작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함
- 4) 보급 및 이용촉진(안 제8조)
- 5) 단체의 육성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6)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 다. 검토의견

- 상위 법령으로 볼 수 있는 「국악진흥법」이 2023. 7. 25제정, 2024. 7. 26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본 조례안은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금천구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